

2020학년도 제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

1. 신청자격

- 가. 2013학번 이전: 5학기 또는 6학기까지 117학점 이상 이수
- 나. 2014학번 이후: 5학기 또는 6학기까지 108학점 이상 이수
- 다. 공 통: 평점평균이 4.0이상인 재학생으로서 2020학년도 후기(2020년 8월) 졸업을 희망하는 자
- 라. 학·석사 연계과정자 제외

2. 졸업요건

- 가. 조기졸업 신청 후 6학기 또는 7학기 말까지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4.0 이상일 것(2013학번 이전: 총 140학점이상 취득, 2014학번 이후: 총 130학점 이상 취득)
- 나. 졸업논문(고사, 실기발표 등) 심사에 통과할 것(다전공 포함)
- 다. 졸업인증제 대상자는 인증에 PASS할 것

3. 신청기한

2020.3.16.(월)~4.16.(목)

4. 신청방법

홈페이지-샘물포털시스템-로그인-통합정보-학생기본-졸업-조기졸업신청/취소-신청

5. 참고사항

- 가. 징계처분을 받은 자(학사경고포함)는 조기졸업 대상 자격을 상실함
- 나. 조기졸업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8학기 정상적인 등록 및 수강을 필하여야 함
- 다. 편(재)입학자는 조기졸업 신청이 불가함
- 라. 조기졸업 신청자 중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2020.04.16.(목)까지 취소신청원을 반드시 학부(과)사무실에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

2020. 3.

서울캠퍼스 교무처장

「학칙」

제9조 (수업연한)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(8학기)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자의 수업연한은 6학기 내지 7학기로 하며, 학·석사연계과정의 경우 7학기로 할 수 있다.<개정 2009.02.11., 2014.11.18>

제52조 (조기졸업) ① 6학기 또는 7학기 말에 제47조,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추고 평균평점이 4.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7.04.25, 2017.07.01>

②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4.02.28., 2017.07.01>

「학사에 관한 규정」

[제13장 조 기 졸 업 \[개정 2011.03.01\]\[종전 제12장에서 이동 2011.03.01\]](#)

제68조 (조기졸업신청 및 자격) 조기졸업 신청은 5학기 또는 6학기말까지 10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4.0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 초 소정의 기한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4.02.28, 2014.11.18>

[종전 제66조에서 이동 2011.03.01][제목개정 2014.11.18]

제69조 (졸업요건) ① 6학기 또는 7학기말까지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4.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.

②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

③ 조기졸업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학생은 8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
④ 편(재)입학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.

[종전 제67조에서 이동 2011.03.01.]

제79조 (졸업요건) ①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대학교에서 정한 입학년도 또는 복학학년 소정의 교육과정(다전공, 부전공 포함)을 이수한 자로서 논문(졸업고사, 실기발표 등) 심사에 합격한 자(단, 교양교육과정은 입학년도별 기준적용)

2. 「학칙」 제51조에 정한 졸업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자

3. 8학기(조기졸업자는 6학기 및 학·석사연계과정자는 7학기) 이상 등록한 자

4. 총 평점평균이 1.7(조기졸업자는 4.0) 이상인 자